
2019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2020. 8.

서울대학교
[감사실]

I. 2019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현황

□ 감사 운영 방향

- 부설학교 및 부속·연구시설 종합감사 실시
- 학내 요청을 기반으로 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

- 실시 기관(대상기간 : 2019. 9. ~ 2020. 2.)
 - 종합감사(5개 기관) : 부설학교, 본부 부속시설 및 대학 연구시설
 - 특정감사(3개 기관) : 대학 및 본부 부속시설
-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 6건 15명
 - 시정 : 5건(재정 4건, 1,963,759천 원 포함)
 - 경고·주의(기관) : 21건
 - 통보 : 10건
 - 개선 : 2건

II.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1

수입대체경비사업 운영 부적정

□ 수입금 미 세입 및 직접 사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임수입징수원은 지체 없이 차세대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입 결의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수입금을 발생 즉시 법인회계로 세입하지 않고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부만 법인회계로 세입하여 나머지 수입금을 기관 수입금 계좌에 잔액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계좌에 보관 중인 수입금을 내부 수기 결재만으로 지출 처리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공간사용료 등 징수 업무 소홀

-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미납 공간사용료 등을 징수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2년 이상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메일로만 독촉 고지를 하는 등 수입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 비소모품은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취득가액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물품관리 및 물품처분의 대상이 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취득가액 50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구입한 비소모품을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고, 50만 원 이상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취득금액 또는 취득수량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여 물품대장과 실제 물품이 수량이 불일치함에도 재물조사 시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물품관리지침]

3

교내 연구과제 운영 부적정

□ 교내 연구과제 형식의 보직수당 지급

- 보직교수는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보직에 대한 보직수행경비를 지원 받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대해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 ◇◇◇에서는 보직교수의 소관업무에 대해 별도의 과제공고 및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기관 집행부에서 연구과제를 지정하여 보직교수들에게 부여하고, 연구비의 대부분을 연구원(보직교수)에게 월정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교내 연구과제 형식으로 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

□ 교내 연구과제 관리 소홀

-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하고, 지원부서의 장은 교내 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타당성 및 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실적, 연구계약 이행여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 ◆◆◆ 소속 교수 A는 □□□에서 지원하는 ■■■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음에도 위 과제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교내 연구과제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선정과정에서 과제 중복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또다시 교내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4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부실학회 참가

-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 및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인회계 등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하고자 한다면, 해당 학술대회의 주관기관, 평판, 부실운영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학술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아야 하며,
- WASET 등 부실학회 관련 교육부 실태조사 및 조치 후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구자들이 부실 또는 약탈적 학술대회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가이드, 부실학회 리스트 등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 ▲▲▲ 소속 연구교수 B, C는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부실학회로 관리하는 학술대회에 여비를 지원받아 참가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 여비 부정 수령

- 여비는 직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여행자는 정당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비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 ▽▽▽ 소속 연구교수 D는 학회참석 및 유관기관 방문일정에 대한 여비를 신청하면서 학회가 취소되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하고 학회참석 2일에 대한 여비(체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5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민간간접비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등 회의 수당은 자기 소관 업무 관련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 ▼▼▼에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를 형식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체 성과평가 기준과 달리 개인별 간접비 기여금액과, 연구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보직 수행, 연구소 행사 기획 및 참석 등에 대하여 소속 교원들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